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인 쇄 2010년 6월

발 행 2010년 6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T. 070-7090-1177)

인 쇄 처 (주)늘품플러스

ISBN 978-89-8479-550-1 93340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	3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5
3. 법제정비의 필요	7
II.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9
1. 북한 차원	11
2. 남한 차원	15
3. 통일대비 차원	18
III.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21
1. 헌 법	23
2. 국제조약: 기후변화협약	24
3. 법 률	26

IV. 남북 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29
1. 남북합의서	31
2. 법 률	35
3. 소결: 남북한 산림협력 관련 법제 평가	45
V.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	47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	49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	54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	59
참고문헌	64
부 록	67

표·그림 목차

[표 I-1]	남북 산림 협력 현황	4
[표 IV-1]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북한산림녹화 지원 관련 내용	37
[표 IV-2]	녹색성장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	42
[표 IV-3]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추진전략	43
[그림 II-1]	북한 산림 면적의 축소 추세	14
[그림 II-2]	북한 산림황폐화 현황: 1970년과 1988년의 비교	14
[그림 II-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17
[그림 II-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추이	20

I . 문제제기: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북한산림녹화 관심 증대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여러 선행연구가 말해주듯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¹ 우리 정부도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는 2007년에 평양 인근 지역의 산림병충해 방제 지원을 위해 약 18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한 바 있다.²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산림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화의 숲을 통해 산림녹화 등의 명목으로 2008년까지 4억 2백만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³ 지방자치단체들도 북한산림녹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2007년 9월에 개성시 개풍동 일대에 9헥타르 규모의 양묘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500만 헥타르 이상의 지역에 조림이 가능한 연간 150만 본의 묘목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⁴ 강원도의 경우에도 2000년 12월에 김진선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강원도 대표단이 원산과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사업

¹ 지금까지 북한산림녹화 지원 및 산림분야의 남북협력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훌륭한 선행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 문헌을 들 수 있다.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통권 제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겨레의 숲, 『북한산림녹화, 어떻게 할 것인가?』 (겨레의 숲 제2차 산림포럼 자료집, 2010.3.29).

² 통일부,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서울: 통일부, 2008), p. 50.

³ 위의 책, p. 58. 연도별로는 2003년 55,000,000원, 2004년 86,000,000원, 2005년 89,000,000원, 2006년 152,000,000원, 2007년 20,000,000원이다.

⁴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2009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p. 95; 조철희,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대 북한산림녹화사업 추진,”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p. 51~57.

이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사업에 포함되어 있다.⁵ 2009년 2월 16일 출범한 대통령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는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을 10대 정책 방향의 하나로 삼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로 ‘북한 산림 복구 지원 등을 통해 그린 한반도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표 IV-2] 참조).

[표 I -1] 남북 산림 협력 현황

구분	사업	주 체	집행액	비 고
민간 차원	산림녹화 사업	평화의 숲	총 4억 원	남북협력기금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	총 13억 원	
		겨레의 숲(민화협 등 17개 단체 컨소시엄)	총 25.5억 원	
		한민족어깨동무	총 6.3억 원	
		한민족남북한선교회	총 2.5억 원	
	난방지원	연탄나눔운동	총 3.2억 원	
		새천년생명운동	총 1.4억 원	
		서비스포피스	총 1.2억 원	
지방 자치 단체 차원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강원도	총 20억 원 상당	솔잎혹파리 방제 약품 및 자재 지원 2001~2007년
	양묘장 조성	경기도	3.6억 원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과 함께 개성 지역 양묘장 조성 (2007~)

5. 이 사업은 설악·금강권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북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와 잣나무넓적잎벌 방제를 위한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pp. 95~98; 황병일, “다시 찾은 금강산 소나무의 푸르름,”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p. 47~50.



구분	사업	주 체	집행액	비 고
정부 차원	임진강 수해 방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2000.9.1)	총 24.9억 원	남북협력기금
	산림 병충해 방제 지원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 회의 합의(2005.8)	총 18억 원	
	연탄 지원	2005년 초 북측 요청	총 8억 원	
	양묘장 조성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 회의 합의(2005.8)	-	-

* 출처: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통권 제3호 (현대경제연구원, 2010.2), p. 5.

2. 기후변화협약체제 출범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발효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1992년 5월 9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⁶(이하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시기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이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1997년 12월 11일에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당사자총회가 개최되어 「기후변화협약 의정서」⁷(이하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2005년 2월 16일부터 발효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고(부속서 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국가에 따라 차등하고 있다(부

⁶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4년 3월 21일 발효. 2010년 3월 2일 현재 당사자 수: 194.

⁷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5년 2월 16일 발효. 2010년 3월 2일 현재 당사자 수: 190.

속서 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협약⁸과 교토의정서⁹에 가입하여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와 환경 문제가 급부상 하면서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기업경쟁력 증진과 국토의 녹색화,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비전으로서 녹색성장을 전개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2010년 1월 13일 법률 제9931호로 제정하였다. 이 법은 동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범지구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¹¹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분석하겠지만 이 법은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감축,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⁸- 1992년 6월 13일 서명, 1993년 11월 30일 국회비준동의, 1993년 12월 14일 비준서 기탁, 1994년 3월 21일 발효(조약 제1213호).

⁹- 1998년 9월 25일 서명, 2002년 10월 30일 국회비준동의, 2002년 11월 8일 비준서 기탁, 2005년 2월 16일 발효(조약 제1706호).

¹⁰-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서울: 녹색성장위원회, 2009), p. 24.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개념은 2005년 환경부와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 주최한 “아·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장관회의(MCED)”에서 우리나라가 주창하여 회의결과인 “서울이니셔티브(SI)”를 통해 처음 채택된 개념이라고 한다.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법제연구원, 2009), p. 72.

¹¹- 이 점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후변화대책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법제연구원, 2009), p. 39.



3. 법제정비의 필요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및 이를 통한 한반도 녹색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후변화협약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분석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남한 내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문제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한반도 차원에서의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이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이행은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¹² 따라서 남한 내에 머무르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체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담론이 북한지역에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¹³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은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이 있는 현행 법제의 내용과 문제

¹² 기후변화협약 및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결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 문헌들을 참조. 김입순,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도서출판 북스힐, 2009); 신의순·김호석,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파주: 집문당, 2005); 이연상, 『쉽게 풀어보는 기후변화협약』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8); 한승호, 『기후변화협약의 새로운 도전: 청정개발체제(CDM)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한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전후하여 이 법을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법제연구원의 『법제연구』, 제36호 (2009)에 다음 논문들이 게재되어 있다. 전재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실효성 증진방안”;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함태성,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의 대응”; 이종영, “녹색성장과 산업법제의 대응”; 한상운,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¹³ 같은 맥락에서 손기웅은 상생 공영의 국가대전략 및 대북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재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녹색성장이 한반도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남북관계도 개선·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계·상생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손기웅, “상생·공영, 녹색성장 그리고 대북·통일정책,” 『통연협 논단』, 겨울 제1·2호 (통일문제연구원 회의, 2009), p. 10.

점을 살펴보고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의 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갖는 필요성 및 의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법적 기반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 관련 현행 법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제4장에서 분석한 현행 남북한 산림협력법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는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의 예비연구 성격을 갖는다. 법제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산림지원 사례, 산림녹화 지원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등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화·발전시켜 별도의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한다.



Ⅱ.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인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지원을 하는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산림녹화사업 지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수립의 3단계로 이어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인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비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화해·협력 증진 및 긴장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사업은 정치적인 분야의 화해·협력 및 긴장완화와 한반도 평화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북한 차원, 남한 차원, 통일대비 차원의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본다.

1. 북한 차원

첫째,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은 북한의 산림 복구 및 북한 산림 황폐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산림녹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림이 인류에게 주는 혜택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산림에는 생명의 원천인 무기물과 미생물들이 자라며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생물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산림은 물탱크, 즉 녹색댐의 역할을 하고 산림의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와 각종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반면 산소를 생성한다. 그 밖에도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국토

I
II
III
IV
V

경관을 형성하며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¹⁴

북한도 산림의 중요성을 모를 리 없다. 북한은 산림법을 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있다. 북한 산림법¹⁵은 산림조성과 산림보호, 산림자원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산림경영사업을 지도·통제하고 있다.¹⁶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홍보하고,¹⁷ 나무심기의 중요성, 산림조성방법과 관리 기술 등을 교육하고 있다.¹⁸ 1993년 3월에는 산림 조성의 수종 교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1999년에는 도시경영상과 국토환경보호성 주관 하에 15만 5,400여 헥타르의 산림 조성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2001년 10월부터는 ‘산림 조성 10개년 계획 기간’(2001~2010)을 수립하고 매년 15만 헥타르의 산림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¹⁴-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대전: 산림청, 2010), pp. 10~12.

¹⁵- 1992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9호로 채택, 1999년 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3호로 수정보충, 199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12호로 수정보충, 2001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6호로 수정보충, 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¹⁶- 북한 산림법은 제1장 산림법의 기본, 제2장 산림조성, 제3장 산림보호, 제4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5장 산림경영사업의 지도통제 등 5개의 장과 4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산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성욱, “북한의 산림법제에 관한 연구,” 『2008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I)』 (서울: 법제처, 2008), pp. 203~250 참조.

¹⁷- 예들 들어 『로동신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노력,” 2007년 3월 19일; 『로동신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 2007년 4월 16일; 『로동신문』, “환경보호는 인류 공동의 절박한 과제,” 2007년 6월 5일.

¹⁸- 필자미상, “나무심기에서 알아야 할 몇가지,” 『조선여성』, 제6호, 통권 제487호 (1996), p. 39; 필자미상, “나무심기상식 몇가지,” 『조선여성』, 제3호, 통권 제514호 (2001), p. 30; 필자미상,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천리마』, 제1호, 통권 제584호 (2008), p. 102; 필자미상,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천리마』, 제10호, 통권 제581호 (2007), p. 101.



있다.¹⁹ 이 밖에도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양평가법, 국토환경보호 단속법 등 산림관련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호법은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파괴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과 질서를 규율한다고 규정하고(제9조), 이를 위해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제2장: 제10조~제18조), 환경오염방지(제3장: 제19조~제37조), 환경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4장: 제38조~제50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북한의 산림은 황폐한 상황이다. 북한의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그림 II-1] 참조). 식량증산을 위한 산지의 농지 전용, 부족한 연료를 보충하기 위한 무분별한 땔감 채취, 수출용 목재, 산업용재 등을 위한 과도한 벌채 등으로 북한 산림이 황폐화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산불 등의 산림재해와 황폐된 산림에서의 토사유출 및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인해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²⁰ 특히 북한 인구가 밀집된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의 도시와 취락 주변의 산림은 대부분 황폐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¹ 북한의 산림황폐화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그림 II-2]는 북한의 산림이 예전에 비해 더 황폐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산림은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복원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황폐화가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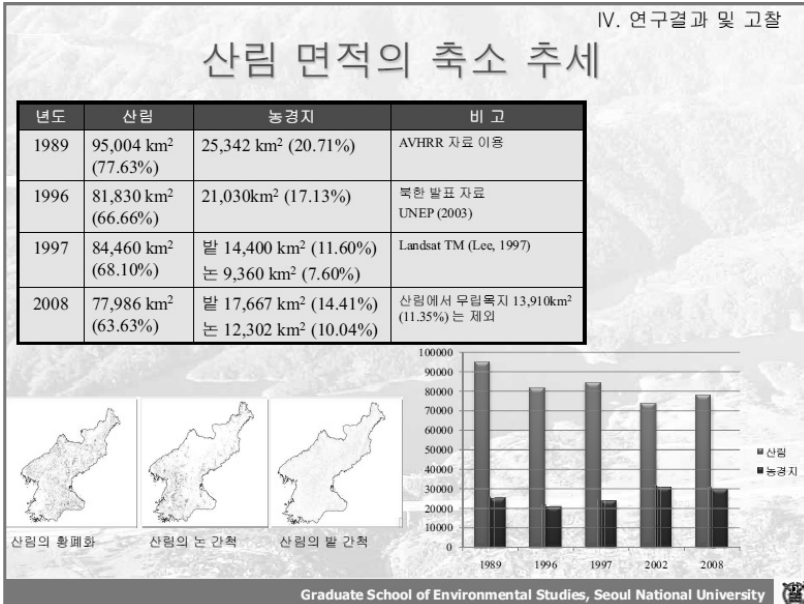
19-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p. 20.

20-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p. 99.

21- 박종화,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조사,”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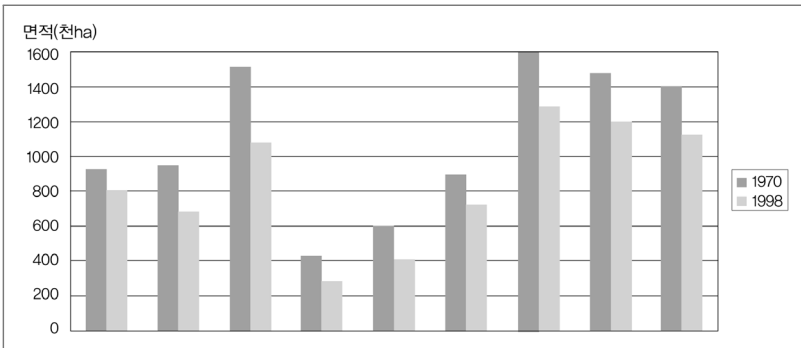
22-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p. 1.

[그림 II-1] 북한 산림 면적의 축소 추세



* 출처: 박종화, “MODIS 위성영상을 이용한 북한의 산림황폐화 실태조사,”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 81.

[그림 II-2] 북한 산림황폐화 현황: 1970년과 1998년의 비교



산림면적 감소: 9,773천 ha (1970년) ⇒ 7,552천 ha (1998년), 2,221천 ha 감소

* 출처: 윤여창·박미선, “북한산림녹화와 기후변화대응,”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p. 88.

둘째,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 생존권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북한은 산림황폐로 인해 자연재해 예측 시스템과 재해 방지 시설이 취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20세기 100년간 북한지역 온도는 1.9°C 상승하였는데 이는 지구 평균 온난화 속도(0.74°C)보다 2배나 큰 것이다. 온난화로 인해 1990년대는 관측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으로 전력생산을 비롯한 경제활동에 커다란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연간 강수량 감소와 달리 이상기후 영향으로 지역성 폭우 강도가 세지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토사 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증대로 이어져 식량난 가중을 초래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주거지 주변 산림 황폐로 식수원 부족 및 주거지 환경 악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²³

2. 남한 차원

첫째,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의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편입하거나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 인도 등과 차별화된 감축행동을 요구하고 있다.²⁴ 또한 2013년 이후부터는 감

²³-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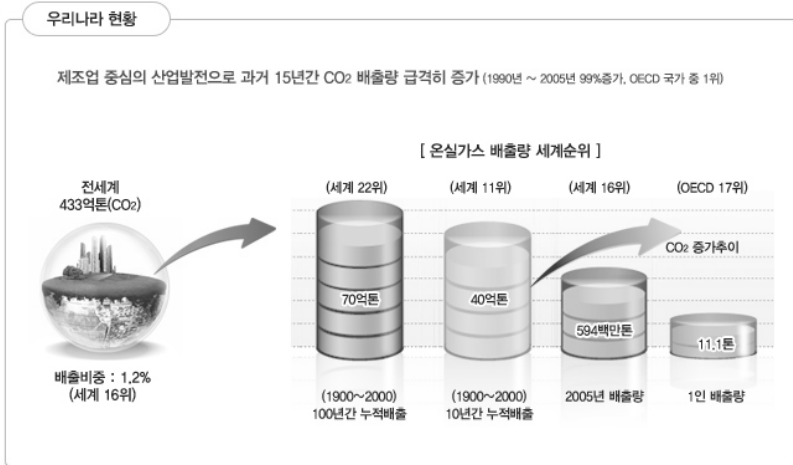
²⁴- “온실가스 감축목표,”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검색일: 2010. 3.15).

축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준비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교토의정서 상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청정개발체제란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청정개발체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²⁵ 따라서 현재의 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산림녹화를 지원한다고 해도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3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체제가 개정되어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청정개발체제의 적용을 받게 되어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점에서 청정개발체제는 향후 한반도 녹색성장 전략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청정개발체제’(KCDM: Korea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추진을 제안하는 견해가 있다.²⁶ 이는 타당한 주장이다.

²⁵ 현재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구주경제공동체,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²⁶ 손기용, “상생·공영, 녹색성장 그리고 대북·통일정책,” pp. 13~14.

[그림 II-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 출처: “온실가스 감축목표,”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검색일: 2010.3.15).

둘째, 사회적으로 진보와 보수로 대변되는 남한 내의 소위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009년 10월 19일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는 2010년 1월 18일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공동프로젝트를 2010년의 핵심프로젝트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 북한산림녹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²⁷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구분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다.²⁸ 북한산림녹화 지원사업의 보수-진보 공동참여는 우리 사회 다른 분야의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7- 사회통합위원회, 2010년 1월 18일 보도자료.

28- “北 산림녹화 지원은 실용·중도 프로젝트,” 『연합뉴스』, 2010년 3월 28일, <www.yonhapnews.co.kr>.

3. 통일대비 차원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첫째,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통일 후 우리 국토를 미리 관리·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의 경우 동독 지역의 산림훼손이 심각하여 1989년의 경우 동독 전 산림의 54.3%가 손상당하였다고 한다.²⁹ 그리고 독일 통일비용 중 20%가 환경복원비용이었다고 한다.³⁰ 북한 산림 복원은 통일 이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크다.

둘째, 또 다른 경제적인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여기서 교토의정서 상의 온실가스 감축제도 가운데 하나인 배출권거래(ET: Emission Trading)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란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경제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량의 감축이나 흡수원에 의한 인위적 제거량의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하거나 그들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에게 적용된다.³¹

배출권 시장 규모는 매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가 2004년 5억 달러, 2006년 300억 달러, 2010년에는 1,5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²⁹-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봄플러스, 2009), p. 147.

³⁰-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p.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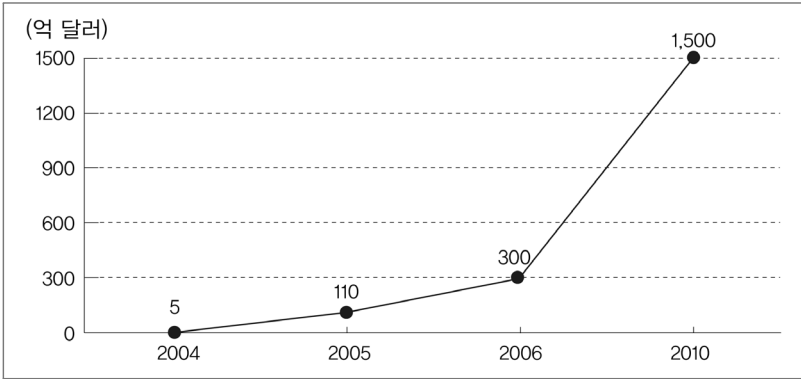
³¹-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는 [각주 24] 참조.

II-4].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결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2013년 이후 포함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북한지역에 산림녹화를 해 두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경우 배출거래권 제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따르는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한국이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의 당사자에 포함되게 되면 배출거래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통일 이전에 산림녹화를 해 두면 통일 이후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단위를 절감할 수 있다. 산림녹화가 더 진행되어 온실가스 감축잉여분이 발생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통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잉여분을 다른 선진국에 거래하여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³²

³² 앞에서 언급한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도와 더불어 공동이행제도의 3가지 제도를 흔히 교토 메커니즘(Kyoto Mechanism) 또는 유연성조치(유연성체계)라고 한다. 교토 메커니즘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JI) 제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를 말한다. 김하연, “교토의정서와 CDM,” 『에너지관리』, 통권 제393호 (에너지관리공단, 2009.2), p. 96. 그러나 이 제도는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에 속해있는 ‘선진국들’ 사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남북한 사이에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점에서 통일 한국에 적용하기도 어렵다.



[그림 Ⅱ-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규모 추이



*출처: 김임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북스힐, 2009), p. 95.



Ⅲ.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정책의 시행은 법제도의 시행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및 한반도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헌법, 국제조약, 법률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기후변화협약을 대상으로 하고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대상으로 한다.

1. 헌 법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산림녹화 지원의 지리적 대상인 북한지역은 헌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에 포함된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산림녹화 지원 정책은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남북한의 화해·협력과 평화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통일 지향’과도 부합한다.³³ 아울러 산림녹화 지원 대상의 인적인 범위와

33-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충돌한다는 견해들이 있으나 필자는 이 두 조항은 상충되지 않으며 양자 모두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북한 지역에까지 미친다고 규정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와 목표의 근거가 되고 평화통일조항은 국제법상 무력의 행사나 무력의 위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통일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도희근, 『남북한관계와 헌법』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9), pp. 13~53 참조.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1항도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헌법적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국민에 포함되고, 따라서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향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도 북한산림녹화 지원의 헌법적 근거로 원용할 수 있다. 동 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필요하다.

2. 국제조약: 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2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으로 당사자는 인류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의 원인을 예견·방지 및 최소화하고 그 부정적 효과(adverse effects)를 완화하기 위하여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및 제3항). 이를 위한 조치로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10가지 공약(commitments)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과 관련해서는 생물자원·산림·해양 등의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과 적절한 보존 및 강화의 촉진과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제4조 제1항 d).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로서 동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약들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1항 (d)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 및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이 조항에서 공약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호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만 동 조항은 모든 당사자에게 ‘공통적이면서도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자국의 특수한 국가적, 지역적 개발 우선순위·목적 및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산림녹화를 지원함에 있어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원용될 수 있다.

북한도 기후변화협약의 당사자이다.³⁴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공약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이 점에서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북한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돕는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이 어느 하나의 특정 국제조약을 이행한다고 해서 국제법 준수 수준이 대폭 향상된다거나 북한의 국가 수준이 높아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나의 국제조약 이행은 다른 국제조약의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다시 북한의 국제규범 준수 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져 외자유치, 대외개방 등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더라도 북한의 국제조약 이행을 도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4- 1994년 12월 5일 승인하였다. 참고로 조약에 대한 기속적 등의 형태로 비준만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달리 북한은 조약법에 비준과 함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 조약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부의 명의로 체결한 조약과 정부의 승인을 받기로 체결 상대방과 합의한 조약은 내각이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는 2005년 4월 27일 가입하였다.



3. 법 률

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은 우리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동 법률은 정부가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한 동 법률은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에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 지원은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증진 및 긴장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남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법 제3조). 협력사업³⁵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

³⁵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4호).



업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17조의2).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법 제1조). 남북협력기금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되었다(법 제3조).

[표 I -1]의 산림분야 남북한 협력사업과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및 집행의 근거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위 조항들에서 찾을 수 있다.

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탄소 사회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이행 등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 산림협력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저탄소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고, 북한의 산림 복구 및 황폐화 방지

I

II

III

IV

V

기여를 통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산림분야의 남북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제2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후변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 전략 추진을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³⁶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³⁷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3항). 여기서 ‘국정의 모든 부문’이 뜻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정의 모든 부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산림정책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북한산림녹화 지원 및 남북한 산림협력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 책무 이행의 일환이 될 수 있다.

³⁶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이하 생략).

³⁷ 바이오매스(Biomass)란 원래 생물생태학 용어로, bio(생물)+mass(물질, 양)가 합성된 용어이다. 우리말로는 생물량 또는 생체량으로 표현된다. 이 중 산림에서 나오는 나무의 줄기뿌리, 잎 등이 산림바이오매스이다.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산림청 기후변화와 산림<carbon.forest.go.kr> (검색일: 2010.3.28).



IV. 남북 산림협력 관련 법제 현황과 문제점

본 장에서는 북한산림녹화 및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 분야의 법제 내용을 살펴본다. 크게 남북합의서와 법률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 경우에는 하위 규정인 통일부장관 고시들이 다수 있는데 산림협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본다. 이어서 남북한 산림협력 분야 현행 법제를 평가한다.

한편, 남한의 산림법령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의 해석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우리 영토이므로 남한의 산림법령들도 북한지역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림기본법은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³⁸ 그러나 입법관할권과는 별도로 남북한은 분단되어 있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법상 국가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림법령의 현실적인 적용범위는 남한 지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남북합의서

가. 6·15 남북공동선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환경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합의

³⁸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①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④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⑤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⑥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⑦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및 ⑧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 바 있다(제4항).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6·15 남북공동선언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밑줄 강조).

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남북은 2005년 8월 18일~19일 개성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합의문을 채택하였는데 산림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5. 남과 북은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and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쌍방은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장소는 앞으로 정하기로 한다.

다. 2007년 10·4선언과 후속 합의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에서 남북은 환경보호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5. (생략)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밑줄 강조).

10·4선언에서 남북은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제8조 제2항). 이에 따라 동년 11월 14일~16일 서울에서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이하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회담에서 남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략)

(4) 자원개발, 농업, 보건의료 등 분야별 협력

(생략)

⑤ 남과 북은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0·4선언에서 남북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I

II

III

IV

V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10·4선언 제5조 제7항). 그리고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동년 12월 4일~6일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제3조 5). 이 합의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제6조 남과 북은 보건의료 및 환경보호분야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생략)
- ② 남과 북은 양묘장 조성 및 이용, 산림녹화 및 병해충방제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생태계보존과 환경오염저감 등 환경보호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제6조 제3항). 이 합의에 따라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합의서를 채택하였는데, 동 합의서에는 산림녹화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사리원지역 양묘장 조성, 이를 위한 공동조사, 산림병해충 피해방지를 위한 공동 조사와 구제, 농약 및 설비 등의 제공을 합의하였다.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서

제2조 남과 북은 환경보호산림분야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양묘장생산능력과 조림능력강화를 위한 산림녹화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당면하여 사리원지역에 양묘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공동조사를 2008년 3월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⑤ 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와 구제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남측이 농약, 설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2008년 3월 중에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법 률

가.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관계발전법에는 북한산림녹화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은 한반도 평화증진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³⁹⁾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⁴⁰⁾ 민족동질성 회복을 규정하고 있는 제8조,⁴¹⁾ 북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제10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³⁹⁾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①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⁴⁰⁾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⁴¹⁾ 제8조 (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평화증진 조항,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조항, 민족동질성 회복 조항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이 강해 북한산림녹화 지원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제10조는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산림녹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원용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조항은 인도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산림녹화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좁은 의미의 인도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10조 역시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한편,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로 하여금 ①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②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③ 남한과 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및 ④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이에 따라 2007년 11월 29일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통일부 공고 제2007-55호)이 공고되었다. 이 기본계획은 전략목표로 ① 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 ④ 민족동질성 회복 지원, ⑤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⑥ 남북관계의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⑦ 대북정책 대내외 추진기반 강화 등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의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인용하면 [표 IV-1]과 같다.⁴²



[표 IV-1]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의 북한산림녹화 지원 관련 내용

<p>IV. 전략목표와 추진계획</p> <p>3. 남북경제공동체 초기단계 진입</p> <p>다. 추진과제</p> <p>2. 새로운 경험사업 추진</p> <p>□ 임업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자원 생산 확대: 양묘장을 조성하여 묘목 생산을 확대하고 황폐지 산림 복구 등을 추진함.○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북한의 산림병해충 발생지역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종합방제계획을 수립함.○ 황폐지 복구와 홍수관리: 산지사방 복구사업 추진 및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체계를 확립·운영함. 남북의 산림자원 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여 산림복구 계획을 수립함.○ 연료림 조성 지원: 조림복구사업 효과를 높이고 북한 지역의 생활연료 지원을 위해 연료림을 병행하여 조성함.

나.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과 통일부장관 고시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은 각각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함께 여러 가지의 통일부장관 고시들로 구성되어 있다.⁴³ 북한산림녹

⁴²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 p. 25. 한편, 정부는 2010년 2월 25일 2010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그 이유로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은 2007년 11월에 수립되었으나, 2008년 초부터 북한의 남북대화 일방중단 등 강경조치와 2차 핵실험 등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기본계획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통일부, 2010년 2월 25일 보도자료.

⁴³ 통일부, 『2009 남북교류협력법규집』 (서울: 통일부, 2009) 참조.

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언급할 수 있다.⁴⁴

(1) 남북교류협력법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다만 예외적으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신고한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법 제17조의2).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8조).

(2) 남북협력기금법

남북협력기금은 ①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②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③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남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용자, ④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전 등 대금결제 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용자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⁴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부록 1],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부록 2] 참조.

손실보전(損失補填)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지정통화(非指定通貨)의 인수, ⑤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⑥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⑦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된다(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북한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은 위의 7가지 가운데 ⑤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동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과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동 규정은 대북지원사업을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 산림복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I

II

III

IV

V

대북지원사업자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⁴⁵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은 남북협력에 필요한 지원자금의 신청(제9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제10조), 지원자금의 용도(제11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제12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제15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동 규정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기금의 종류는 1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인도적 지원자금’ 또는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 북한산림녹화 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제7조). 여기서 ‘인도적 지원자금’이란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를 말하며,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란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를 말한다.

⁴⁵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5. (생략)

16.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인도적 지원자금”이라 한다)

17. (생략)

18.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인도적 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①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② 북한주민의 식량사정 개선, ③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 ④ 북한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⑥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1조). 북한산림녹화 지원은 홍수피해 방지 및 이로 인한 식량문제 개선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①, 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소극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⑥에 의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지원대상 가운데 ①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 ②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③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④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2조). 북한의 산림황폐지는 ②의 취약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I
II
III
IV
V

산림녹화 지원은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지원절차(제8조), 기금의 집행(제9조), 사용결과 보고(제10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제12조), 기금의 평가(제12조의2) 등의 규정을 두어 기금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기후변화대응 정책,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9조 제2항).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전인 2009년 7월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10대 정책방향 가운데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 가운데 산림녹화와 관련되는 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녹색성장 추진전략 10대 정책방향과 50대 실천과제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①-1. 탄소가 보이는 사회 ①-2. 탄소를 줄여가는 사회 ①-3.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사회 ①-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10대 정책방향	50대 실천과제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②-1.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사회 구축 ②-2.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②-3. 원자력 공급능력 확충 ②-4.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③-1. 기후감시, 예측 및 조기대응체제 구축 ③-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③-3. 국가 식량안보체계 확립 ③-4.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능력 강화 ③-5. 기후친화적인 해양 이용 및 관리 ③-6.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③-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p. 56.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와 같은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의 추진전략으로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표 IV-3]과 같다.

[표 IV-3]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 추진전략

<p>4. 저탄소를 지향하는 그린 한반도</p> <p>▶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를 공유하면서 평화적 상징성을 가진 북한 산림 녹화사업을 남북관계 개선사업으로 우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조림 면적: (‘13) 5만 → (‘30) 80만 → (‘50) 280만 ha - 산림복구사업을 CDM 사업과 연계, 민간 기업의 참여 유도

I
II
III
IV
V

- ▶ 에너지 협력과 생태·환경 벨트 구축을 통한 그린 한반도 구현
 - 송배전 시설이 필요없는 소형의 자족형·분산형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기술협력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에너지협력 추진
 - 비무장지대(DMZ)의 환경 친화적 개발·이용을 통해 남북간 생태·환경 벨트 구축

- ▶ 남북 공동의 기후변화대응 및 감축전략 마련
 - 이상기후에 대비, 임진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연재해 공동대응체계 구축

*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p. 6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또한 저탄소 사회의 구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제38조), 5년 단위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40조), 기후변화대응의 목표관리(제42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제45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추진(제48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산림·녹지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⁴⁶ 그리고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4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1조(녹색국토의 관리)

-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4.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제55조 제3항).

3. 소결: 남북한 산림협력 관련 법제 평가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 10·4선언과 후속 남북합의서 등에서 포괄적으로 환경분야의 교류협력에 합의하였고 남북한 산림협력과 관련하여서는 산림녹화, 병해충방제, 양묘장 조성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남북한 산림협력에 대한 남북간의 기초적인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진하기로 하였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한 산림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로 인용될 수 있지만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산림협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법 자체에는 남북한 산림협력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및 통일부장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은 남북한 산림협력사업의 요건과 절차, 남북협력기금의 대상요건과 집행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산림복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이 인도적 지원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기금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금 지원의 조건, 절차, 방법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

I
II
III
IV
V

한 내용들을 통일부장관 고시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에 있어 문제가 없지 않다.

넷째, 북한의 산림복구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의 남북한 산림협력사업이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녹색성장국가전략에도 포함되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이고,⁴⁷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사항은 녹색성장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⁸ 아울러 사회통합위원회도 북한 산림복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남북한 산림협력이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통일부, 녹색성장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및 기타 행정부처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명확한 역할 분담이 선행되지 않을 때 오히려 남북한 산림협력 정책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현행 남북한 산림협력법제는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집행 및 협력사업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중심으로 되어 있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협약체제상의 온실가스 감축대상국에 포함될 것과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의 법제 개선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47-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 제1항).

4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V. 결론 및 법제 개선의 방향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은 북한 차원, 남한 차원, 통일대비 차원에서 필요하고 각각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점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의 방향도 남한 차원과 대북 차원, 통일 대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결론에 같음하여 남한 산림법제의 개선 방향, 대북 산림협력법제의 개선 방향, 통일대비 차원에서의 법제 대응 방향의 3가지로 구분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의 방향을 살펴본다.

1. 남한산림법제 개선 방향

가. 기후변화협약체제 대응

첫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남한에서는 현재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조합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사방(砂防)사업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의 산림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산림기본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의 역할을 대내외에 표방하는데 있어서 상징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관련 법령들이 표방하고 있는 산림의 공

I

II

III

IV

V

익적 기능에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산림기본법 제17조⁴⁹에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기능을 명시하여 산림의 취급에 있어서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⁵⁰

둘째, 산림흡수원에 대한 특별법제정 내지는 현재 시행중인 법률의 개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후변화협약은 동 협약의 모든 당사자에게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과 저장소의 지속가능한 관리 촉진과 적절한 보존 및 강화를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4조 제1항 e). 또한 부속서 1에 포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의 흡수원과 저장소를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의 완화에 관한 국가정책을 채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기후변화협약 제2조 제2항 a).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이에 부응하여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제3항). 이와 같이 산림흡수원의 확보는 국제법상 그리고 국내법상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한 산림관련 법령으로는 기후변화협약체제상의 유연성조치인 배출권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체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⁵¹ 이들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산림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현재 시행중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49- 산림기본법 제17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재해방지 및 휴양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0- 김태원, “한국 산림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p. 92.

51- 위의 글, pp. 92~93.

리에 관한 법률을 대폭 손질하여 산림흡수원 확충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에서 이행한 온실가스감축실적을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⁵² 그러나 감축실적에 대한 등록이 차후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때에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와 연계하여 거래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독일은 2005년 9월 30일 「프로젝트-메카니즘에 관한 법률」(Projekt-Mechanismen-Gesetz)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기업에 의하여 국제배출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배출권을 발급받기 위한 프로젝트의 개발과 실행, 국제배출권거래의 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⁵³ 독일과 같이 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 수행에 따라 국내에서 이행한 온실가스감축실적을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법적인 보장을 통해 사업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을 할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⁵⁴

⁵²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① 정부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발적 협약체결기업 등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등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⁵³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제(CDM)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연구』, 제436집 제3호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2), pp. 309~310.

⁵⁴ 위의 글, p. 315.

나. 녹색성장을 반영한 국토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목적 가운데 하나인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에서(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조 참조) 국토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국토기본법에 녹색성장의 이념이 추가되어야 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을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으로 정의하고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2호).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녹색성장의 개념 속에는 경제와 환경의 두 가지 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1조는 이 두 가지 축을 ‘녹색생활’과 ‘지속가능발전’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동 조 제1항은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마련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의 기본이념은 ‘국토의 지속가능성’으로서 녹색성장 개념의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인 경제 또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에 포괄될 수 있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기본법 제2조는 “국토는 …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53조의2 제1항은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현행 국토기본법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합치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핵심개념인 녹색성장이 국토기본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⁵⁵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 제2항).

둘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에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제1조),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제2조 제2호)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국토계획법 제19조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으로 ①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②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④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⑤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⑦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및 ⑧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고 녹색성장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내용이 관련 법률에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5-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p. 85.

녹색성장의 이념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야 한다.⁵⁶

2. 대북 산림협력법제 개선 방향

가. 산림협력분야 남북합의 구체화

남북한 산림협력분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남북합의서의 체결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남북간 산림협력 합의의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형식에 있어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또는 접경지역의 이용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환경합의서⁵⁷를 체결하고 산림분야 등 각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 또는 환경합의서를 체결하지 않고 별도의 산림협력만을 규율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산림협력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산림녹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이다.

나. 산림협력 법체계 및 규율 내용 정비

북한 산림녹화 지원 관련 현행 국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과 북의 교류협력을 규율하는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유일하

⁵⁶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pp. 85~86.

⁵⁷ 구 동서독의 경우 1987년 9월 8일 환경분야의 기본합의서인 『환경보호분야에서 포괄적인 관계 형성에 관한 동서독정부간 합의서』(Regierungsvereinbarung DDR/BRD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이른바 환경보호기본협정(Umweltschutz-rahmenabkommen)이 체결되었다. 손기웅,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p. 157.



다. 그런데 이 법은 남북의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 대북인도적지원 등 성격이 다른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과 남북연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칭 「남북교류협력기본법」과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⁵⁸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 산림녹화 지원과 관련하여 순수한 의미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및 통일부장관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및 협력기금에 관한 내용들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지속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도지원만을 관장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방식은 ①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②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남북협력기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

⁵⁸ 장명봉, “중국·대만(양안) 교류협력법제에 관한 고찰-남북교류협력법제 발전과 관련하여”, 『2004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법제처, 2004), p. 77, 79; 제성호 외 7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16~117. 참고로 중국·대만 양안간의 교류협력법제는 대만의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안관계조례를 비롯하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협력, 인적교류별로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은 그대로 둔 채 남북협력기금법만을 개정하는 방안, ④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폭 손질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이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조건,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⑤ 현재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과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대북산림협력 관련 내용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통일부장관 고시로 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산림녹화사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기금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남북관계발전법 제12조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로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조 제3항은 “국가는 …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녹색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 법률은 산림환경 보호 및 산림기능 증진과 해외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산림환경기능증진기금(일명 “녹색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58조).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자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고(제61조), 녹색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 해외산림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사업단을 두고 있다(제62조).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외산림자원조성을 전제로 하는 동 법률을 북한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칭 ‘북한녹화사업지원기금’ 또는 ‘북한녹색기금’ 제도를 신설하여 녹색기금제도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심의기구와 집행기구를 두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금을 신설하는 경우 그 내용은 앞의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 현행 법제를 개정하는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다. 대북산림정책 추진체계 조율

통일부, 녹색성장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산림청 기타 행정부처 등 여러 기관이 관여되어 있는 대북산림정책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 기관의 역할이 조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녹색성장위원회에 통일부장관이 배제되어 있는 현행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개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 그런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통일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⁵⁹ 물론 녹색성장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⁶⁰ 그러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정부측 위원에 배제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다.⁶¹

⁵⁹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정부측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⁶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녹색성장의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가 있다(법 제5조 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은 지역적으로는 평양에, 분야별로는 농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여 왔다. 이 점에서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 다양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⁶²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또한 북한의 특정 지역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북한 산림녹화 지원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한의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간에 산림복구 지원에 관한 합의를 체결하여 북한 산림녹화 지원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북한 산림녹화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남북 강원도 간에 체결한 교류협력합의서에는 산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포함되어 있다.⁶³ 반면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농업분

⁶¹ 정부조직법 제26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⁶² 김정수, “토론문, 『북한산림녹화, 어떻게 할 것인가?』 (겨레의 숲 제2차 산림포럼 자료집, 2010.3.29), p. 62.

야로만 한정하고 있어⁶⁴ 북한 산림녹화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3. 통일대비 차원의 법제 대응 방향

가. 북한과의 조림CDM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측 자산 동결 조치,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색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 간의 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의 관점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에 대비하여 남북 간의 조림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CDM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고, 자발적 CDM 사업에 참여하며, 국가 CDM 사업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를 설립하여야 한다.⁶⁵ 북한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8년에는 국가승인기구도 설립하였다.⁶⁶ 따라서 남북한 사이에는 조림CDM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DM 사업

63-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pp. 95~99.

64- 위의 책, p. 100.

65- 김하연, “교토의정서와 CDM,” p. 98.

66- 북한의 국가 CDM 사업승인기구는 북한 ‘국가환경조정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DNA 사무총장은 리홍식으로 알려져 있다.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pp. 3~4.

추진 주체는 제도적인 장치 외에도 재정적인 능력, 기술적인 능력, 인적자원 능력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즉, CDM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이나 필요한 기술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사업을 개발하고 등록·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⁶⁷

CDM 사업의 대상 여부는 대상사업의 추가성(additionality) 확보 여부가 핵심 관건이다.⁶⁸ 우선 환경적인 추가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즉, 청정개발체제의 개별 사업(프로젝트)에 의한 배출감축량은 실질적이고 측정가능하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에 효과적이어야 하고, 그 사업이 없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이어야 한다(교토의정서 제 12조 제5항 b, c). 현재 이 환경적 추가성 요건만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추가하여 재정적 추가성(financial additionality)까지도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⁶⁹ 따라서 조립CDM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CDM 대상사업의 추가성 요건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립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황폐지를 대상으로 하는 조립CDM 사업비용 가운데 사전준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나 된다고 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사전 준비 비용을 감축하기 위하여 북한 황폐지 조립 CDM 사업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⁷⁰

67- 노동운, “국토관리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CDM) 도입과 적용가능성,” 『국토』, 통권 제318호 (국토연구원, 2008.4), p. 27

68- 김하연, “교토의정서와 CDM,” p. 97.

69-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제(CDM)에 관한 법률,” pp. 301~302.

70- 한기주·윤여창,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립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 (한국임학회, 2007), p. 243.

나. 조립CDM 사업 추진을 위한 북한의 법제 환경 개선

조립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한 차원의 대비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CDM 사업이 전무한 상태이다.⁷¹ 북한내 CDM 사업을 위한 관련 제도나 법뿐만 아니라 승인 기준이나 지침, 절차 등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승인 제도나 지침이 CDM 사업 등록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CDM 사업 승인 기준이나 지침, 절차 없이는 투자자의 CDM 사업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이 CDM 사업을 추진하려면 CDM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등록 요건 등에 대한 법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⁷²

다. 대북 투자환경 개선

남북관계 차원에서 CDM 사업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북투자가 활성화되고 남한 주민 및 기업의 대북투자가 증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투자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조립CDM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CDM 사업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민간의 대북투자를 저해하는 요인들로 북한체제의 특수성과 정보부족, 투자의 하부구조 낙후, 고급인력의 부족, 통신의 문제, 기업경영의 제한과 같은 점들이 거론되고 있다.⁷³ 따라서 민간대북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71.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p. 127. 남한은 2009년 10월 현재 34건의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72. 북한의 CDM 사업 환경 및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pp. 127~150, 특히 pp. 137~138 참조.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북한과의 협의 및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00년 12월 16일 체결되어 현재 남북한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이하 “투자보장합의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투자보장합의서를 보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행 투자보장합의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조의 투자자산의 개념과 범위, 제2조 제1호의 ‘각자의 법령’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의 금강산관광지구내 우리측 투자자산 동결조치에서 보듯이 투자자산을 둘러싼 분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분쟁해결절차를 실효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⁷⁴

이와 함께 남한주민 및 기업의 투자여건 및 인적왕래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북한이 가칭 「남한동포투자보호법」을 제정하도록 협의·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⁷⁵ 이 법을 제정하는 경우 중국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1994년 3월 5일 대만동포의 투자보호를 위해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 주석령 제20호로 공포·시행하였다. 중국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은 모두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만동포의 대륙투자를 보호, 장려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과 다른 외국인

73- 이충호, “북한의 투자환경과 대북투자 진출방안,” 『지역개발연구』, 제7권 제1호 (조선대, 2002), pp. 158~160.

74- 박덕영·강승관,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92호 (법무부, 2010.4), pp. 137~140.

75- 최은석, “중국·대만(兩岸)교류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북한법연구』, 제9호 (북한법연구회, 2006), pp. 240~241.

에 비해 우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⁷⁶

이상과 같은 일련의 노력으로 대북투자여건이 개선되면 국제 투자자들과 국제금융기구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⁷⁷

76- 중국의 대만동포투자보호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과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이규창,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협력사업 및 내부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통일부 용역결과보고서, 2008), 제8장 참조.

77- 박찬봉은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에 나설 경우 국제 투자자들과 국제금융기구들도 따라 나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찬봉,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외교』, 제86호 (2008.7), p. 16.

참고문헌

1. 단행본

- 겨레의 숲. 『북한산림녹화, 어떻게 할 것인가?』. 겨레의 숲 제2차 산림포럼 자료집, 2010.3.29.
- 김임순. 『저탄소 녹색성장』. 서울: 도서출판 북스힐, 2009.
-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서울: 녹색성장위원회, 2009.
- 산림청. 『제65회 식목일 참고자료』. 대전: 산림청, 2010.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북한산림녹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10.2.9.
- 손기용.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2』. 서울: 늘봄플러스, 2009.
- 신익순·김호석. 『기후변화협약과 기후정책』. 파주: 집문당, 2005.
- 이규창. 『남북교류협력 관련 제도 개선방안-협력사업 및 내부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통일부 용역결과보고서, 2008.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10년 백서』.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
- 정우진. 『북한 CDM 사업 잠재력 분석 및 남북협력방안 연구』.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 통일부. 『2008 남북협력기금 백서』. 서울: 통일부, 2008.
- _____. 『2009 남북교류협력법규집』. 서울: 통일부, 2009.

2. 논문

- 김태원. “한국 산림에 관한 법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 김하연. “교토의정서와 CDM.” 『에너지관리』. 통권 제393호(에너지관리공단), 2009.2.



- 노동운. “국토관리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CDM) 도입과 적용가능성.” 『국토』. 통권 제318호(국토연구원), 2008.4.
- 박덕영·강승관. “개성공단 투자보호와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고찰.” 『통상법률』. 통권 제92호(법무부), 2010.4.
- 손기웅. “상생·공영, 녹색성장 그리고 대북·통일정책.” 『통연협 논단』. 겨울 제1·2호(통일문제연구협의회), 2009.
- 송동수.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법제연구원), 2009.
- 이종영. “독일의 청정개발체제(CDM)에 관한 법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3호(한국토지공법학회), 2009.2.
- 이해정. “북한 나무심기 사업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통권 제3호(현대경제연구원), 2010.2.
- 조홍식·황형준. “녹색성장과 환경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법제연구원), 2009.
- 최은석. “중국·대만(兩岸)교류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북한법연구』. 제9호(북한법연구회), 2006.
- 필자미상. “나무심기에서 알아야 할 몇가지.” 『조선여성』. 통권 제487호, 1996.6.
- _____. “나무심기상식 몇가지.” 『조선여성』. 통권 제514호, 2001.3.
- _____. “나무심기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천리마』. 통권 제584호, 2008.1.
- _____. “나무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천리마』. 통권 제581호, 2007.10.
- 한기주·윤여창.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립 CDM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한국임학회지』. 제96권 제3호(한국임학회), 2007.

3. 기타

『로동신문』.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적노력.” 2007년 3월 19일.

- _____.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움직임.” 2007년 4월 16일.
- _____. “환경보호는 인류 공동의 절박한 과제.” 2007년 6월 5일.
- “北 산림녹화 지원은 실용·중도 프로젝트.”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0.3.28.
- 사회통합위원회. 2010년 1월 18일 보도자료.
- “산림바이오매스란 무엇인가.” 산림청 기후변화와 산림<carbon.forest.go.kr>, 검색일: 2010.3.28.
- “온실가스 감축목표.” 녹색성장위원회<www.greengrowth.go.kr>, 검색일: 2010.3.15.
- 통일부. 제1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2008~2012).
- _____. 2010년 2월 25일 보도자료.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하 “대북지원사업”이라 한다)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추진과 이 사업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북지원사업”이라 함은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이재민의 구호와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
2. 식량난 해소를 위한 농업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3. 보건위생 상태의 개선 및 영양결핍 아동과 노약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자연재해 예방차원에서 산림복구 및 환경보전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
5. 기타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대북지원사업자”라 함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단체에 한한다)과 1년 이상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한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

제 3 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소개서 1부
 2. 대북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서 1부
 3. 제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정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분배투명성의 확인) 대북지원사업자는 통일부장관의 요구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물품이 단일지역에서 분배되는 단순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만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북한의 상대방과 교환한 반출물품의 인도인수증
2. 북한의 상대방이 작성하여 교부한 반출물품의 분배내역서
3. 현장방문과 수혜자 면담내용을 포함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
4. 기타 분배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 5 조 (대북지원사업자의 지정해제) ①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확인보고서 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정부의 방침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4.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최근 2년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반 실적(북한주민접촉, 북한방문, 물품반출입 등에 한한다)이 없는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해당 대북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해제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 6 조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 ① 협력사업 승인신청 서류의 기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에서는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추진경위
 - 나. 주요내용
 - 다. 세부 추진계획
 - 라.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마. 기대효과
2. 협력사업 상대에 대한 소개서에는 협력사업 상대자의 경력(기구인 경우에는 연혁), 사업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협력사업 상대자와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협력사업의 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력사업의 명칭
 - 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기구명칭·소재지 및 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다. 협력사업의 목적·기간·방법, 협력사업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협력사업 당사자간의 자금분담률에 관한 사항
 - 라.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에 관한 사항
 4. 북한당국의 또는 북한의 권위 있는 기관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하여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협에서 내용의 이행보장에 관한 사항
 - 나. 협력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남북왕래보장 및 협력사업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 ②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내용이 불필요하거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재를 면제하거나 추가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 (협력사업 승인 처리기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제 8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특

정의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하 “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자
2.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3.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③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당해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배투명성 및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9조 (지원자금의 신청)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대북지원사업계획서 또는 협력사업계획서 1부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자체재원확보내역서(예금 잔고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1부
5. 분배투명성확보계획서(북한의 상대방과의 대북지원사업 추진관련 의향서 등을 포함한다) 1부
6. 제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 1부
7. 기타 대북지원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 계획 등 통일부장관이 자금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부

제10조 (기금지원사업의 요건과 지원자금의 규모) ①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이하 “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으로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2.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2.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3.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4.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5. 북한의 자활·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6.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 ③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2.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4.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 ④ 지원자금의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1. 과거 1년간 자체자금에 의한 대북지원 실적(해외모금 포함)
 2.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의 분야와 수혜대상자의 적절성



3. 분배투명성 확보가능 수준
 4. 과거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자체재원 집행실적 등)
 5. 분배대상 지역
 6. 기타 사업내용의 효과성과 전문성 및 정부정책 우선순위 등
- ⑤ 기금의 지원은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당 연 1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지원자금의 용도) ① 지원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에 한한다.

1.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2.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3.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 ②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① 지원자금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선지급시에는 채권 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원자금을 받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 기금지급신청시 이전까지 전체적인 사업진도와 기금 사용 계획을, 기금지원 결정 후 매분기별 집행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매 기금지급신청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분배투명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4. 지원물품은 원칙적으로 국내산으로 하며, 기금집행신청시 물품구입비의 부가가치세 환급부분을 제외한 금액과 수송비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신청하여야 한다.
5. 물품의 구입 및 수송, 공사 등의 계약(이하“물품 등의 계약”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경쟁방식(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물품 등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지원 결정전 자체재원 선투입 등 사업추진 과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외 취급할 수 있다.
7.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통일부장관이 조정하여 통보한



사업계획서의 주요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통일부장관은 효율적인 기금지급 신청 및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④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지원사업의 내용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지원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지원의 중단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또는 제12조에 따른 집행절차 중 주요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동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지원한 기금을 반환받거나 회수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해당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북지원사업 물품의 반출신청) ①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인도적 대북지원 취지에 부합하며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2.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반출되는 물품(국내에서 그 재원이 지출되고 제3국에서 반출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②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통일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북지원사업자로 하여금 그에 갈음하여 필요한 반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관련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북지원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자금사용보고서와 관련하여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등) ①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사업,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남북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사업 등 통일부장관이 당해 대북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요건·제출서류 및 용도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인 등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국내 농수산물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수송비와 지원농산물의 가공 및 포장, 운송과정 전반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09. 9. 11)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필요한 부분 발췌)

제 1 장 총 관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 제 3 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 4 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 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 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 (여유자금의 운용 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 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하 “남북교역·경협보험”이라 한다)
6.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지원”이라 한다)
7.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 등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9.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용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10.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1.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용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용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용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4.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5. 이산가족의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이하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이라 한다)
16.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

- 는 용자(이하 “인도적 지원자금”이라 한다)
17.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북한 비핵화 지원자금”이라 한다)
18. 기타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의 지원 또는 용자(이하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제 8 조 (지원 절차)

-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금 종류에 따라 별지 서식에서 정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이 영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사용자에게 지원방침을 통보한다.
-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사용자로부터 기금 집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9 조 (기금의 집행)

-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을 집행한다.
- ②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기금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5호 내지 제7조 제14호의 지원 등 자금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의해 개설한 예금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제10조 (사용결과 보고)

①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서식에서 정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대한 지원은 예외로 한다.

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금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은 해당 기금사용자를 기금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

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통화) 기금지원 통화는 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통일부장관이 지원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지원제도·기금지원에 대한 심의, 기금사용결과의 점검·평가를 위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된다.
- ③ 그 밖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에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 2 (기금의 평가)

-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단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 (채무의 조정)

-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

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나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 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 10 장 민족공동체 회복지원

제 2 절 인도적 지원자금

제51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인도적 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2.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개선
3.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
4. 북한주민의 보건·의료환경 개선
5.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
6.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52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51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
2.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3.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
4.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3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인도적 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 교류지원자금”은 “인도적지원자금”으로 본다.

제 4 절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

제57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해 제48조, 제51조, 제54조 이외의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제58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의 지원 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기타 남북교류·협력지원 자금”으로 본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필요한 부분 발췌)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 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원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

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 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 3 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제 4 조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녹색성장의 정착·확산을 위하여 사업자와 국민,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8 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은 제3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및 제9조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 9 조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①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녹색성장국가전략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녹색경제 체제의 구현에 관한 사항
2. 녹색기술·녹색산업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정책, 에너지 정책 및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4. 녹색생활, 제51조에 따른 녹색국토,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 등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금융,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정부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평가의 절차, 기준, 결과 등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①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평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4조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목표 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 과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사항
7.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8.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협상·국제협력, 교육·홍보,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9.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업 등의 고충조사, 처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10.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38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정부는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관련 계획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국민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여건 등을 감안하여 국가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가격기능과 시장원리에 기반을 둔 비용효과적 방식의 합리적 규제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
3.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한다.
4.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시장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감축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탄소시장을 활성화하여 국제 탄소시장에 적극 대비한다.
5.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생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위험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

제40조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①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2.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단계별 대책
4.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후변화대응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2.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3. 에너지 자립 목표
 4.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설정할 때 국내 여건 및 각국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교통·수송, 가정·상업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관리업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등의 이력, 기술 수준, 국제경쟁력, 국가목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관리업체는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에 대하여 등록부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5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⑨ 관리업체는 제8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정부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5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8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⑪ 제5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부의 관리, 관리업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산림 등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작성·관리하거나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준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문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각종 정보 및 통계를 분석·검증하여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정보 및 통계 관리방법, 관리기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의 도입)** 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 제5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을 높이고, 지역별·권역별로 태양력·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이에 관한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생물자원 및 수자원 등의 변화 상황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조사·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관련 전문기관의 지원 및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수질, 보건, 농·수산식품, 산림, 해양,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6 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시책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



도록 한다.

2. 국토·도시공간구조와 건축·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 및 국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5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199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과 원칙, 기본정책 방향, 주요지표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소관 분야의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중앙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1조 (녹색국토의 관리)** ①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이 경제발전 및 사회개발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이하 “녹색국토”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제49조에 따른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에너지·자원 자립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2. 산림·녹지의 확충 및 광역생태축 보전
 3.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이용·보존
 4. 저탄소 항만의 건설 및 기존 항만의 저탄소 항만으로의 전환
 5.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6. 자연재해로 인한 국토 피해의 완화
 7. 그 밖에 녹색국토 조성에 관한 사항
- ③ 정부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 제55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① 정부는 에너지 절감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화학비료·자재와 농약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유기농 농수산물 및 나무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확산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농지의 보전·조성 및 바다숲(대기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하여 바다 속에 조성하는 우뚝가사리 등의 해조류군을 말한다)의 조성 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식품종 개량 등을 통하여 식량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9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녹색생활 문화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공영방송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

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고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60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1조 (국제협력의 증진) ① 정부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국외진출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에서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기후변화대응 평가에 대한 국가별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및 평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2조 (국회 보고) ① 정부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 (국가보고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보고서를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 제6항·제9항 또는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42조 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 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44조 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연구총서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 (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區域合作的新關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공저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저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저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공저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공저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저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저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저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저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공저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옥	외 공저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공저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공저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저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공저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공저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저	20,000원

학술회의총서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협동연구총서

2007-10-01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6,000원
2007-11-03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저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공저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공저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공저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공저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공저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공저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공저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공저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공저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공저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공저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공저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공저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근 외	공저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공저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공저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공저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공저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공저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공저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6,000원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2007-14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공저
2009-02(I)	1)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공저
2009-02(II)	2)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공저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공저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2007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i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P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 방안 예비연구

 통일연구원

